소통과 신뢰로 하나되는 창원특례시의회

제156회 창원시의회 (임시회)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6.10.27.)

창원시 리·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창 원 시 의 회

(기획행정위원회)

창원시 리·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10. 27.(화)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 출 일: 2026. 10. 16.

나. 제 출 자: 창원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. 10. 20. (의안번호 제100호)

라. 상정 및 의결: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6.10.27.)

2. 제안설명 요지 (이유정 자치행정국장)

반장 제도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읍·면·동별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, 재난·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을 이·통·반장의 임무로 추가하여 이·통장에게는 이 임무 수행에 따른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최일선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·통장에 대하여 실질적 예우를 하려는 것임.

3. 주요 내용

가. 리·통에 두는 이장·통장 외에 반장은 필요하면 둘 수 있도록 변경함.(안 제5조)

나. 재난·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을 이·통·반장의 임무로 추가하고 이·통장에게는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. (안 제7조, 제12조)

4. 참고 사항

○ 관계 법령 등 (안건책자 참조)

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정이)

□ 개정 목적 및 주요 내용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반장 제도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이·통·반장의 임무에 재난·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을 추가하여 관련 활동에 대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○ **【안 제2조(이·통·반장의 임명)】**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도록 함.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이・통・반장의 임명) ① 리에 이장, 통에 통장, 반에 반장을 둔다.	제5조(이・통・반장의 임명) ① 리와 통에는 각각 이장과 통장을 두고,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.

○ **【안 제7조(이·통·반장의 임무)】** 이・통・반장의 임무에 '재난・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'을 추가・신설함.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이・통・반장의 임무) 이·통·반장은 읍·면·동장 또는 이·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처리한다. 1. ~ 7. (생 략) <신 설> 8.・9. (생 략)	제7조(이・통・반장의 임무) ---------- ----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7의2. 재난・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8.・9. (현행과 같음)

○ **【안 제12조(실비변상 등)】** 이·통장에게 재난·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에 따른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.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실비변상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	제12조(실비변상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이·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제7호의2 임무 수행에 따른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□ 종합 의견

○ 창원시 전체 반장 임명률은 56.7%로, 특히 성산구는 29.1%에 그치는 반면, 마산회원구는 82.1%로 지역별 편차가 큼. 또한 읍·면 지역 임명률은 78.9%인데 비해 동 지역은 53% 수준으로,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반장 공석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음.

이에 반장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농복합도시인 창원시의 특성을 반영하고 현실과 제도 간 괴리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 다만, 반장 미임명에 따른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행정 수요를 고려한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.

【타 지자체 현황 **(경남, 특례시)】 의무 규정(7), 임의 규정(4)**

구 분	경 상 남 도(7)	특 례 시(4)
의무 규정	진주·통영·사천·김해·밀양·양산시	화성시
임의 규정	거제시	수원·용인·고양시

【창원시 반장 운영 현황】

ㅇ 임　무 : 시보 및 통지서 배부, 주민등록실태 조사 등 **이통장 업무 보조**

ㅇ 지　원 : 상여금 50천원(25천원×2회[설·추석]), 종량제봉투 50천원(4.2천원×12회)

ㅇ 현실태 : 통신발달 및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**반장 역할과 기능 축소**

→ 신규 지원자 부족 및 고령화, '반장 공석'의 문제 발생

❖ **반장 임명률 현황 : 창원시 56. 7% [정원 11,342명 / 현원 6,430명]**

<구별 현황> <2026. 8. 기준>

구 분	의창구	성산구	마산합포구	마산회원구	진해구
임명률	52.3%	29.1%	70.6%	82.1%	58.3%

<지역별 현황>

구 분	읍·면 지역	동 지역
임명률	78.9%	53%
	최고 100% 진동면, 진북면, 진전면	최저 11.5% 반송동

* (읍·면 지역) 반장 역할이 커 동 지역보다 임명률이 높음
(아파트지역) 역할이 미비하여 선발하지 않거나, 지원자가 없어 공석 많음

❍ '26년 7월, 「경상남도 이장·통장 활동 지원 조례」[1]에 이장·통장에 '재난특별활동비'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고,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18개 시·군과 협의를 거쳐 관련 시·군의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음.

창원시도 이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 도·시비 매칭 사업으로 '27년부터 창원시 관내 이·통장에게 '재난·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' 임무에 따른 '재난특별활동비'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1) 제3조의2(재난특별활동비) 도지사는 이장·통장에게 재난·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○ 조례 개정 시 2027년부터 이·통장에게 분기별 10만 원씩 연간 총 40만 원의 재난특별활동비가 지급됨. 다만, 재난·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이 이·통·반장의 공통 임무임에도 이·통장에게만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.

○ 자연재난 발생 시, 최일선에서 주민 안전을 확인하고 현장을 복구하는 이·통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, 재난특별활동비 지급은 이·통장의 책임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종합적으로 볼 때, 본 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반장 제도를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이·통·반장의 재난·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에 대한 임무와 이·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. 이를 통해 지역 최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, 재난 대응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○ 재난특별활동비는 연간 약 7억 7,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나, 이 중 40%를 도비로 확보할 수 있어 시 재정부담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임. 다만 반장 임의규정 전환에 따른 행정 공백과 이·통장 업무 가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【창원시 이·통장연합회 및 예산지원 현황】

◆ 회 원 수 : 1,942 명(창원시 이·통장)　　◆ 주요활동 : 주민여론사항 파악, 행정시책 홍보 등

◆ 예산지원 현황　　(단위:천원)

개 인	구 분	건강검진	기본수당	회의수당	명절상여금	현장활동비	종량제봉투
	금 액	300(격년)	400×12월	20×24회	400×2회	50×12월	20L(18개)×4분기

연합회 보조금	구 분	계	한마음다짐대회	모범이통장연수	환경정화사업
	금 액	57,200	30,000	11,000	16,200

6. **질의 · 답변 요지**: 기재 생략

7. **토론 요지**: 기재 생략

8. 심사 결과: **원안 가결**

9. **소수의견 요지**: 없음

10. **기타 필요한 사항**(부대의견, 건의 사항, 촉구사항 등): 없음